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07. 12. .

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특별승진」은 중앙우수 제안자로 하고, 시자체 채택제안자에게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만 부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음
- 채택제안자에 대한 부상금의 지급액은 800만원 까지 5등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300만원 까지 3등급으로 축소 조정하였음

2. 수정 주요내용

- 인사상 특전 조정(안 제17조)
 -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부여를 「특별승급」만 부여토록 조정
- 부상금의 지급(안 제18조)
 - 채택제안자에 대하여 「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등 5단계 「50만원~800만원」의 부상금을 「금상·은상·동상」등 3단계 「50만원~300만원」으로 축소 조정 하였음

3. 참고사항

- 「국민제안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
- 「공무원제안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
- 경북 도정혁신팀4727(2007. 10. 10)호의 공무원제안 활성화 위커숍 개최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 제1항중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을
“금상·은상·동상”으로 한다.

안 제17조중 “별표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을 삭제한다.

안 제18조 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 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 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 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안 제19조 제2항중 “별표2”를 “별표”로 한다.

안 별표1을 삭제하고, 안 “별표2”를 “별표”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6조(제안의 등급)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u>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u> 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안의 등급) ①..... <u>금상·은상·동상</u>
제17조(인사상 특전)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u>별표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u> 을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인사상 특전)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부상금의 지급) ① (생략) 1. 금 상 : 5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2. 은 상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동 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장려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 노력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제18조(부상금의 지급) ① (원안과 같음) 1. 금 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 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 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삭 제) 5. (삭 제)
제19조(상여금 지급)① (생략) ②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u>별표2</u> 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9조(상여금 지급)① (원안과 같음) ②..... 별표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별표 1] <u>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u>(제17조 관련)			[별표 1] (<u>삭제</u>)		
창안등급	인사특전의 종류	인사특전 대상자			
금상 · 은상 · 동상	특별승진	• 6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 • 기능직지방공무원			
	특별승급	• 5급 이상의 호봉제 적용을 받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 특별승진을 부여하기 곤란한 자			
	※ 인사특전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장려상 · 노력상	특별승급	• 경력직지방공무원 및 특수경력직지방공무원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비 고 1. 2인의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부제안자는 특별승급으로 한다. 2. 3인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별표 2]			[별표]		
상여금지급 기준액표(제19조제2항관련)			상여금지급 기준액표(제19조제2항관련)		
지 급 대 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지 급 대 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예산 절감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
행정 개선		· 수 :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 우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 미 : 500만원 미만	행정 개선		· 수 :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 우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 미 : 500만원 미만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제안”이라 함은 시민 또는 공무원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시민 및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창안)”이라 함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①시민과 시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 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된다.

제8조(제안의 보완)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구미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구미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창안등급의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금액 결정
4.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국 소속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추천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제안의 심사

제12조(심사기준 등) ①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제1항 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채택여부의 결정) ①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조회 등) ①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심사위원회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6조(제안의 등급)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②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정부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③창안자에 대한 시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7조(인사상 특전)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부상금의 지급) ①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 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 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 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②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19조(상여금 지급)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써 제안자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 ②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③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1조(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장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

제22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시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 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7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23조(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실시의 권고)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6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상여금지급 기준액표(제19조제2항관련)

지 급 대 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
행정 개선		·수 :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우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미 : 500만원 미만